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ugust 7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영국 : 신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도입

최근 영국 정부는 새로운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23 년 7 월 영국 국세청인 HMRC 는 이와 관련한 10 가지 주요 지침 및 국제거래 매뉴얼("International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가격 문서화 불이행 관련 처벌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상 기업들은 분석대상거래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하는 등 사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기:**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2022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법인:** 연결매출액 EUR 7.5억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CbCR 제출 대상이며, GloBE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국적기업 그룹 또한 중대한 수준의 국제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이전가격보고서를 자체적으로 구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완화 조항:**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상 별도의 분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① 단순 지분참여 요건에만 충족하는 자금조달약정인 경우 ② 2023년 3월 31일 이전 합의된 APA 대상거래 (*1).

한편, 원칙적으로는 영국 소재 법인 간 거래는 개별기업보고서 대상거래가 아니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특허 박스(Patent Box, IP 매출 및 로열티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여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에 가입하였거나 링 펜스 거래(Ring fence trade,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취급 및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여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완화 조항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HMRC는 이전가격보고서 상 해당 거래에 대한 분석이 배제된 사유에 대해 기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2023년 3월 31일 이후 합의된 APA 대상거래는 개별기업보고서 상 포함하되 신청서 또는 연례보고서 상의 내용을 차용할 수 있음

- **SAT 서식** (Summary Audit Trail,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시 합리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설문지 형태의 서식): 공개 의견 수렴 후 도입할 예정이며, SAT 서식을 통해 기업의 이전가격 분석을 지원하고 HMRC가 고위험 세무이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통합분석:** 개별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개별 거래들은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한편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업보고서 상 조세관할지역 별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HMRC의 국제거래 매뉴얼("INTM450103")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통합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른 저부가가치용역은 다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개별기업보고서는 법인 단위로 작성되는 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관점에서 거래 규모(1백만 파운드, 약 16억)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거래유형을 구분하고 정상가격 산출 목적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의 중요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거래도 존재하며, 해당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거래
 -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 허여 거래
 - 가치 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을 수반하는 거래
 -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산의 양도, 사용 또는 권리 허여 거래
 - 글로벌 또는 지역적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용역거래
 -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 "Cost contribution agreement")을 수반하는 거래
 - 대상기간 동안 법인의 기능, 위험 및 자산을 영국 내외로 이전한 경우 등 사업구조재편과 관련된 거래
 - 대상기간 중 개시 또는 중단된 거래

- **국가별파일:** 개별기업보고서는 법인 단위로 작성되어야 하나, 다국적기업 그룹은 국가 단위, 즉 영국 소재 법인들 전체를 포괄한 개별기업보고서("UK Local File") 작성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업데이트:** 매년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업데이트를 통해 법인의 기능분석과 경제분석 결과가 사업적 변화를 반영한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업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OECD 이전가격 지침 3.82에 기술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경제분석 업데이트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새로운 경제분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비교대상회사들의 최근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APA 가 체결된 거래는 대상기간 동안 합의된 이익률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분석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과세당국 제출:** HMRC는 법인세 신고일 이후 언제든지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최초 £300(약 50만원), 이후 일일 최대 £60(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SAO(Senior Accounting Officer)의 책임:**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HMRC는 문서화 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서 별 최대 £3,000(약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책임은 SAO에게 있으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 및 관리 규정의 부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1 전 6619, 2023.05.04

제목: 청구법인의 연결자회사인 AAA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브랜드사용료(3%)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

결정요지: 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1) 사실관계

- 청구법인 ○○○은 ○○○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그룹 관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 등의 연결자회사를 2010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AAA는 2009.1.1. 청구법인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 상표"(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브랜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상품 **매출액의 3%**(이하 "쟁점브랜드사용요금")를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여 왔음
- 조사청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에 대한 2014~2018 사업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금 6개 값 중 그 중위값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금인 0.2%가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BBB에게 시가 상당액의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AAA도 동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 이에 따라 처분청은 AAA가 2015 사업연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 중 시가(0.2%)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2021.4.5.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2. 심판청구를 제기

2) 쟁점

- 청구법인의 연결자회사인 A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브랜드사용료(3%)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 처분청이 적용한 0.2%는 법인세법령상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면,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은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이 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AAA가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은 쟁점브랜드(30개) 중 일부가 개별 제품브랜드(Brand Identity or Product Brand; BI or PB)의 역할을 하는지 또는 단순히 그룹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그룹브랜드(Corporate Identity; CI)의 역할만 하는지 여부임. 그 이유는 ○○○그룹과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간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그룹은 기업브랜드 집중유형으로, 이는 △△△그룹과는 매우 다름 -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1) 쟁점브랜드사용요금(3%)는 법인세법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종업계 브랜드 사용요율의 중위값인 0.2%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브랜드 사용요율의 범위는 0.007%~0.75%이며 중위값은 0.2%임. 또한 2019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브랜드 사용요율이 0.1%~0.5% 범위로, 3%는 지나치게 높음 - 주식회사 CCC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3%)는 계약 당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이므로 시가가 아님. 이후 특수관계가 사라졌음에도, 당초 3%로 부당하게 계약하지 않았더라면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

· 용역 간 고도의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단순히 동종업계 브랜드 사용요율의 중위값을 시가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한계가 나타나므로, 0.2%는 시가가 아님

- ① 두 그룹은 브랜드 전략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광고활동과 브랜드 소유 및 관리 현황의 차이도 있음
- ② 이러한 차이로, 대상 매출액 규정의 차이 등 상표 사용계약서 상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임
- ③ 두 그룹은 영위하는 업종 범위와 자산규모도 차이가 있으므로 브랜드 활용방식은 상이할 수밖에 없음

- 만일 조사청 의견과 같이 0.2%를 시가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사용료는 홍보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은 법인세법령상 1순위인 "제3자 거래가격"과 2순위인 "감정가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법인세법령상 시가에 해당

- ① 과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와 합작설립한 주식회사 CCC로부터 수취하기로 합의한 사용요율이므로, 법인세법령상 시가 정의에 부합
- ② 주식회사 CCC 설립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였고, 그 당시 3%의 사용료율이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임. 또한 주식회사 CCC는 현재 ◎◎◎의 100% 자회사가 되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여전히 3%를 지급하고 있음
- ③ 설령 제3자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DDD 감평법인의 감정가액(3%)에 따라 쟁점브랜드사용료율은 시가임

- 한편, AAA는 브랜드 프리미엄 덕분에 경쟁사보다 높게 판매하고 있어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 과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도 결코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이 결코 시가보다 높지 않으며, 다른 식품 기업에서도 개별제품브랜드 사용료율로 3%내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 청구법인 역시 C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0.2%를 수취하는 등 그룹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음

- DDD 감평법인은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기초원자료는 용역당사자인 EEE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이며, 해당 평가에서 사용한 이익접근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평가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

-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의 시가는 동종기업들의 브랜드사용요율의 중위인 0.2%임

- ① 최근 법원이 은행의 상표사용료 사건에서 동종업계 금융지주 상표 사용요율 0.2%를 시가로 판시함
- ② 식품업계 유사기업의 그룹 C 사용요율의 중위값이 0.2%임
- ③ ○○○그룹과 △△△그룹은 매출규모나 지분율에 있어 유사하며, C와 B가 결합하여 사용되는 등 비교가능성이 높는데 브랜드 인지도는 ○○○그룹이 더 우위에 있는 바, 조사청이 유사기업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 0.2%를 시가로 본 것은 정당
- ④ 조사청이 HHH감평법인에게 ○○○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는데, 2014년 기준 적정요율이 0.13%인 바, 이보다 높은 0.2%를 시가로 인정한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처분임

<p>2) 처분청과 같은 방식으로 브랜드 사용료율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선정된 기업들 중 단 하나의 기업만 브랜드 사용료율을 변경하더라도 시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건 처분의 논리에 따르면 0.2%보다 높거나 낮은 율을 적용하는 모든 법인들은 법인세법 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p>	<p>2) AAA가 시가를 초과하는 쟁점브랜드사용요율(3%)을 지급한 이유는 ○○○그룹 사주의 <u>사익 편취 때문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한 계열사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이 3%를 수취하고 있음 - 과다수취한 사용료는 사주에게 매년 배당금 및 급여로 10년 넘게 지급되었음
---------------------------------------------------------------------------------------------------------------------------------------------------------------------------	---------------------------------------------------------------------------------------------------------------------------------------------------------------------------------------------------------------------------------------------------------------

4) 판단

- ○○○그룹의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은 ◎◎◎와 합작투자(JV)회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CCC로부터도 그 설립 당시인 2004년경부터 **쟁점브랜드사용요율과 동일한 3% 상당의 브랜드 사용료를 계속 수취하여 왔고**, 허여대상 중 개별 제품브랜드가 없는 사업회사에 대해서는 0.2%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책정하는 등 ○○○그룹 내에서도 구체적인 브랜드 사용 내용에 따라 **사업회사별로 그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아무런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그 결과 청구법인의 마진율이 동종업계 기업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 한편, 처분청이 시가로 본 요율인 **0.2%**는 △△△그룹 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적용된 요율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령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세부적으로 두 그룹은 기본적으로 개별 제품브랜드의 운용 및 수수료 산정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룹브랜드 활용 측면에서도 두 그룹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에 비해 더 많은 비용(홍보비) 등을 지출하여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룹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03 관세

인도 당국의 지속적인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조사
중국 EV 제조사인 BYD 에게 120 억 추정 예상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인도조사국(DRI; Directorate Revenue of Intelligence)은 BYD 에게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관세의 과소납부를 주장하며 추징을 진행함

1) 배경

- 인도는 Make in India 정책 下 인도 내 제조시설을 유치하여 인도 내 조립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해 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차 CKD의 조립 정도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부과함

2) 주요내용

A. CKD 조립 정도에 따른 관세율

- 배터리 팩 또는 모터가 샤시에 장착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CIF \$40,000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100% 또는 70%의 관세가 부과됨
- 주요 부품(엔진, 기어박스, 트랜스미션)이 조립되지 않은 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15%의 관세, 상호 조립되어 있지만 샤시에 장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35%의 관세가 부과됨

유형	관세율
1. 주요부품(엔진, 기어박스, 트랜스미션)이 미조립된 상태의 CKD	15%
2. 주요부품이 조립되었으나 샤시에 미장착된 상태의 CKD	35%
3. 주요부품이 조립되어 샤시에 장착되었으며, 수입금액(CIF)이 \$40,000 미만	70%
4. 주요부품이 조립되어 샤시에 장착되었으며, 수입금액(CIF)이 \$40,000 이상	100%

B. 관세추징 사유

- BYD는 주요부품이 샤시에 미장착된 상태로 수입된다고 주장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았지만, DRI의 조사 결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인상된 관세율로 과거 수입분에 대한 추징 진행

3) KPMG's Comment

- 인도는 지속적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 대한 관세 추징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아래 사항들을 바탕으로 추징을 수행하고 있음
 - ① 低 관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② 인도 수입 시 적정 HS Code 및 관세율 적용 여부 검토
 - ③ FTA 특혜세율 적용 시 FTA 적정성 검토
-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Target이 되는 현재, 위 3가지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 후 발생 가능 Risk를 검토 및 대응해야 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